

# 지하철 공사로 막힌 횡단보도...도로로 내몰린 보행자

### 광주 곳곳 시설물로 막히고 차량정지선도 없어 길 건너기 '아슬아슬' 노인들 빙 돌아가다 채 못 건너고 중간 멈춰서는 등 교통사고 '위험'

광주 도심에서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가 공사 시설물 등으로 막혀 보행자들이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도로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공사 시행업체들에게 횡단보도 절반 이상 점유금지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11일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광주도심에서는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광주 시청~광주역·17km) 2단계(광주역~첨단~시정·20km)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도시철도 공사 구간을 살펴본 결과 총 5곳의 횡단보도가 공사시설물로 막혀 있었다.

이날 오후 1단계 6공구 공사현장인 광주교대 인근 한 횡단보도는 공사현장을 막는 플라스틱 방호벽으로 가로 막혀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모두 막혀 있었고 보행자 통로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보행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차량이 멈춰서는 횡단보도 정지선조차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광주시 북구 풍향동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 앞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횡단보도에는 방호벽 사이로 그나마 보행자 통로가 마련돼 있었지만 방호벽 때문에 횡단보도 밖으로 통로가 나 있었다.

사실상 보행자들은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야 했다. 원래대로라면 관바로 걸어야 했을 횡단보도 주변을 빙 돌아야 하 신호등 파란불이 유지되는 20초 안에 건너지 못한 노인들도 많았다. 이들

은 신호가 바뀌었지만 도로 위에서 있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2호선 1단계 1공구 공사 현장도 심각했다. 운전초 인근 거리부터 상무역까지 350여m 구간에 설치된 3개의 횡단보도 모두 공사로 인해 절반 이상이 가려져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구 운전저수지 인근 롯데하이마트 앞 횡단보도도 8m 중 6m가 가로막혀 있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시작한 이후 시공사업체들이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운전저수지 공사 현장의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의 지하에서 수도관이 발견돼 피치 못하게 횡단보도 부분에서 공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최대한 불편없이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공사로 인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점령하게 되는 등 '교통전환'이 이뤄질 경우 시공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점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왕복 4차선 이상인 경우는 광주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담당자는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수시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담당자는 "관련 안전 논의마다 횡단보도 절반 이상을 가로 막지 말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찰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내부 지침조차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1단계 6구간 시공사인 G기업과 1구간 시공사인



최근 광주시 북구 풍향동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공사 현장에서 횡단보도가 공사 적치물로 인해 가로막혀 있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L건설은 차선 변경과 횡단보도 점령 시 각각 광주동부·북부경찰, 광주서부경찰 교통과에 점용신청서 또는 교통처리계획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G기업 관계자는 "애초 교통처리계획 도면에는 절반씩 나눠 공사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장물이 발견되면서 공사 범위가 넓어져 이상 범위를 점용하게 됐다"며 "문제가 된 구간은 횡단보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쓰러진 나무 맞아...산불진화대원 벌목작업 중 숨져

장흥에서 60대 산불진화대원이 벌목 작업 중 숨졌다.

11일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산불진화대원 A(64)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료 2명과 15m 높이의 참나무를

베던 중 쓰러진 나무에 가슴을 맞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흥군정 소속 산불진화대원인 A씨는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할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장흥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산불진화대원 A(64)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료 2명과 15m 높이의 참나무를

근은 주택 주변 '위험수목' (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A씨 등 산불진화대원 15명을 보내 벌목을 지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장흥군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처벌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법원 "휴게시간에 작업했다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던 전남의 한 제지회사가 휴게시간에 가동한 기계에서 근무한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노동자 9명이 전남의 한 제지회사 A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자 9명에게 각 73만~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등 기계가동으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장 특성상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휴게시간 이전에 기계가동이 중단된 시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약정된 휴게시간이 보장

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하루 2차례 1시간씩 휴게시간이 지정되고 이외에 별도로 보장 되지 않은 점과 휴게시간 이전 기계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우라도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치우거나 생산된 원단을 내주고 작업물에 대한 정리를 하거나 작업을 위해 대기했다"면서 "이런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업무는 기계 작동 전 준비하는 작업과 기계 작동 중단 후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 된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 불법도박 수익금 600억 찾을 수 있을까

### 비트코인 1476개 사라져...검찰, 정보 유출 혐의 경찰 압수수색

검찰이 사라진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1476개(2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 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일선 경찰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5억여원을 부과 받은 A(여·35)씨에 대한 수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수사관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을 압수하기 하루 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는 사실을 검·경 사건브리핑에 성모(63·구속 재판 중)씨를 통해 유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의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의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건 브로커 성씨와 성씨에게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건넨 B(45·구속 재판 중)씨를 통해 일부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

트코인 1798개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

1일 거래량 제한 탓에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경찰이 322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이 1476개(당시 60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다른 계정으로 사라졌다.

검찰은 우크라이나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됐고, A씨의 가족이 우크라이나 출신 이었다는 점에서 A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봤다. 1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A씨에게 608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심되는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압수수색 집행 중 공범에게 이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면서 추징금을 15억원으로 줄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며 "가족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있는데 그쪽에서 환전하겠다"고 반문하며 '사라진 비트코인과 경찰이 연 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씨는 검찰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압수수색 전 정보를 알고 A씨 측근이 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 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